

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는 대양주지역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고,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.

제 2 조(명칭) 본 단체는 “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” (영문명 ISKS Oceania Chapter)라 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주 사무소는 Asian Studies, School of Cultures, Languages and Linguistics, University of Auckland 와 School of Comparative Cultures, Languages and Linguistics, University of Queensland 에 둔다.

제 4 조(사업) 본 회의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, 연구 및 교환
2. 분과별 연구회 및 학술토론회 운영
4. 지역 학술대회 등 학술회합의 개최
5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에 입회의사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 8 조(회원의 탈퇴)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제명)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 인
2. 부회장 1 인
3. 재무이사
4. 학술이사

② 이사장은 회장으로 하고 이사는 4 인 이하로 두며,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가 된다.
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,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충한다.

제 12 조(임원의 선임방법)

회장, 부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다.

제 13 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이사회 의장으로서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9 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2. 정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4. 사업계획의 승인
- 5.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

제 20 조(총회의 소집)

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, 정기총회는 매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장 회 계

제 31 조(재정)

-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2012년 4월 1일

설립자 송창주 (서명)

설립자 이동배(서명)

설립자 황규원(서명)

설립자 Richard Phillips (서명)